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기관의장

람

제1755회 2023. 6. 5.(월)

차 례

훈 령

-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383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_____ 1

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9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_____ 4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9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_____ 7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208호 분묘개장공고 (2차) - 검단17호근린공원 _____ 8

인천광역시 서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강 범 석

2023년 6월 5일

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383호

인천광역시 서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

인천광역시 서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도시기반과장, 도시개발과장”을 “도로과장, 도시계획과장”으로, “기획예산실장”을 “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연구”를 “연구, 공공복리 및 안전”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

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(제9조 관련)

공간정보	등급	분류기준
항공사진	비공개	○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(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)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, 3차원 입체자료
	공개제한	○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(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)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, 3차원 입체자료 ○ 2차원 좌표(經·緯度)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○ 3차원 좌표(經·緯·高度)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
	공개	○ “비공개” 및 “공개제한”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, 3차원 입체자료(인터넷·내비게이션·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) ○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·토지의 소유자와 법 제2조 제4항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,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. ※ 다만,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,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.
위성영상	비공개	○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(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)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
	공개제한	○ 정밀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○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(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)이 노출된 해상도 1.5m보다 정밀한 자료 ○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○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중 노출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축소 가능
	공개	○ “비공개” 및 “공개제한”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○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(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) 이외 지역의 자료(인터넷·내비게이션·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) ○ 다만,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에 대한 기록 유지 ○ 좌표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할 경우 정밀보정하지 않은 2차원좌표만 포함 가능
전자지도	비공개	○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(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)이 포함된 지도
	공개제한	○ 군사지도 ○ 전력·통신·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○ 다만, 항공기·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·통신·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시 ○ 1:1,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
	공개	○ “비공개” 및 “공개제한” 대상 이외의 지도 ○ 인터넷·내비게이션·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:5,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·표고값 표시 불가

공간정보	등 급	분 류 기 준
해양 공간정보	비공개	○ 접경해역 수심자료 ○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해역 또는 접경해역 내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
	공 개 제 한	○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 ○ 다만,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, 해양레저, 해양공간 정보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협의 후 공개 ○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
	공 개	○ “비공개” 및 “공개제한” 대상 이외의 수심 ○ “비공개” 및 “공개제한” 대상 이외의 해저 영상자료 ○ 해도, 전자해도 등
기타 공간정보	비공개	○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(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)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○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(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)의 명칭 및 속성자료
	공 개 제 한	○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○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한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○ 다만,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
	공 개	○ “비공개” 및 “공개제한” 대상 이외의 그 밖의 공간정보 ○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○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 영상자료 ○ 토양·지질·지변도, 도시·도로 건설계획도 등

※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은 각각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정하는 바에 따름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-92호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,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6. 5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부여·폐지 도로명주소 :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231 외 12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(폐지) 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 유
		별 도 열 략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3.6.5.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

고시일 : 2023-6-5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799-21	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231 (오류동)	20090710	검단이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 지명 부여 및 검단신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	제3오수중계점보장
2	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50-5	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로13번길 38 (오류동)	20090922	오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제2오수중계점보장
3	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08-14	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89 (오류동)	20090922	봉화촌이라 불리는 자연부락을 지나는 도로이므로 자연마을의 이름을 따 명명	제1오수중계점보장
4	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-273	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7-15 (백석동)	20220221	인근의 자연부락인 거월을 지나는 도로임	
5	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-267	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7-21 (백석동)	20220221	인근의 자연부락인 거월을 지나는 도로임	
6	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-30	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7-11 (백석동)	20220221	인근의 자연부락인 거월을 지나는 도로임	
7	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18-5	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85번길 40-5 (오류동)	20090922	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8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43-2	인천광역시 서구 발산로5번길 8 (원당동)	20200720	발산로의 시점으로 부터 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9	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-70	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31번안길 22 (가좌동)	20170703	장고개로 시작지점에서 약2,310m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도로	
10	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-27	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31번안길 24 (가좌동)	20170703	장고개로 시작지점에서 약2,310m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도로	
11	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0-172	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262번길 10-8 (석남동)	20210531	중봉대로 시작점의 2,620M 지점에서 분기하는 도로	
12	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0-170	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254 (석남동)	20090706	임진역안 당시 의병장으로 금산 싸움에서 7백 의병과 함께 전사한 조한선생의 호를 따서 제명	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

고시일 : 2023-6-5

연번	도로명주소	폐지사유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인천광역시 서구 가월로 7-2 (백석동)	건물 말소	20220221	인근의 자연무락인 거리를 지나는 도로임	(주)백석개발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-94호

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

「주택법」 제15조(사업계획의 승인)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6. 5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사 업 명: 인천검단지구 AB20-2BL 공동주택
2. 사업주체: 중흥건설(주) (대표 백승권)
[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나주호로 442-129]
3.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
 - 가. 위 치: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B20-2블록
 - 나. 대지면적: 74,207m²
 - 다. 사업규모: 연면적 259,942.6829m²
 - 라. 용 도: 공동주택(아파트) 1,44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 - 마. 사 업 비: 742,547,550천원
4. 사업기간: 2023. 9.11. ~ 2027. 2.10.
5.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
 -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. 끝.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-1208호

분묘개장공고 (2차) - 검단17호근린공원

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[검단17호근린공원] 편입부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『장사 등에 관한 법률』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,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절차에 따라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.

2023. 6. 5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분묘위치: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산168-2
2. 분묘기수: 1기
3. 개장사유: 검단17호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
4. 개장방법
 - 유연분묘: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
 - 무연분묘: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
(납골당 봉안)
5. 개장 후 안치장소: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온로 61(인천가족공원)

6. **안치기간:** 봉안 후 10년
7. **공고기간:**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간
8. **공 고 인:**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9. **신 고 처**
 - 한국부동산원 북부보상사업단 인천사업소
(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4, 백양빌딩 405호(☎ 032-569-7566~8))
 -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
(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, 서구청 제2청사 4층(☎ 032-560-4802))
10. **신고방법:** 신고(연고)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(사진촬영)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(제적등본, 족보, 인감증명, 사실확인 서류 등)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1. **기타사항:** 분묘개장공고 후 개장과정에서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된 분묘 및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분묘의 공고는 본 공고로 같음합니다.